KOSHA GUIDE

KOSHA GUIDE

KOSHA GUIDE

KOSHA GUIDE

KOSHA GUIDE
기술지원규정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A-G-8-202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참고하거나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권고 규정임

기술지원규정의 개요

o 제정자 : 권 현 길
o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o 제·개정 경과
- 2002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03년 3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03년 4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서면심의
- 2003년 9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03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03년 12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06년 4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06년 5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12년 5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16년 6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24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등)
- 2025년 1월 표준제정위원회 본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등)

o 관련규격 및 자료
- ILO Code of practice, recording and notific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 and diseases
- 미국 BLS, Occupational injury & illness classification manual
- 독일 BG, Schlüsselverzeichnisse zur unfallanzeige
- 일본 노동성, 勞働災害分類の手引
- 호주 노동성, Type of occurrence classification system
- 통계청의 표준분류코드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8호(통계의 유지·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산업재해발생기록 및 보고 등)
- 통계법 제3조 제2호, 제22조(표준분류)

o 기술지원규정의 적용 및 문의
- 이 기술지원규정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의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규정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25년 3월 26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목 차

1. 목 적 ····· 1

2. 적용범위 ····· 1

3. 용어의 정의 ····· 1

4. 업무상사고 재해자와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분류기준 ····· 2

5. 산업재해 특성 분석항목 ····· 3

6. 사업장 특성 분석항목의 분류체계 및 기준 ····· 7

7. 재해자 특성 분석항목의 분류체계 및 기준 ····· 11

8. 재해발생 특성 분석항목의 분류체계 및 기준 ····· 15

<부록1> 발생형태 분류코드 ····· 48

<부록2> 기인물 분류코드 ····· 50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및 통계법 제3조(정의)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기록・보존 및 통계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해예방기관 및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기록 또는 재해예방기관, 사업장 등의 산업재해 통계분석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의거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산출하는 정부 공식통계 또는 개별적인 특정 목적의 비공식 통계산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재해”라 함은 법 제2조(정의) 규정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

(나) “업무상사고 재해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사망자, 부상자를 말한다.

(다) “업무상질병 재해자”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질병에 이환된 자 또는 사망한 자를 말한다.

※ 질병이라 함은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병인, 환경, 숙주(宿主)현상 등에 의하여 몸에 이상(異常)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라) “통근재해”라 함은 작업장과 다음 장소 사이를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① 주소(주 거주지) 또는 거소(부 거주지)
②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장소
③ 출장, 파견 등 업무와 관련된 장소

(마) “근로손실”이라 함은 재해당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손실을 말한다.

① 사망한 경우
②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③ 작업시간이 단축된 경우
④ 작업량이 감소된 경우
⑤ 다른 작업으로 전환이 된 경우(중작업→경작업)

(바) “휴업”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전직, 퇴직 포함)를 말한다.

(사) “비휴업”이라 함은 출근은 하였으나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등에 의한 작업시간 단축, 작업량 감소, 작업전환 등 작업제한을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 “사고(Accident, Trouble event)”라 함은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려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의지에 반하는 예측불허의 사태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공장의 설비가 예측에 반해서 갑자기 파괴되거나 화재, 폭발 등의 물적손해를 입은 상태이다. 상해는 사고에 의해서 일어나며, 사고는 불안전상태나 불안전행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용노동용어사전)

(2)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업무상사고 재해자와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분류기준

(1) “요부질환”은 반복·누적 작업으로 발병한 경우 또는 중량물의 인력 취급 등의 작업, 동작·행위로 발병한 경우에는『업무상질병 재해자』로 분류하고, 떨어짐·넘어짐 등의 사고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요부질환의 경우에는『업무상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2) “요부 외 신체부위 염좌 등 질환”은 평소작업의 누적·반복적 동작으로 발병한 경우에 한하여『업무상질병 재해자』로 분류하고, 그 외 떨어짐·넘어짐 등의 사고와 일시적인 신체반작용 동작·행위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업무상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3) “감염성 질환”은 사람(환자), 동물, 식물 등에 접촉하거나 세균, 바이러스가 함유된 물체, 주사기 등의 취급 과정에서 감염, 잠복기를 거쳐 발병된 경우에는『업무상질병 재해자』로 분류하고, 배양기 등의 설비사고로 누출되어 감염·발병된 경우에는『업무상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4) “화학적,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환”은 정상적인 작업 중에 장시간 노출되어 만성중독·손상을 입은 경우에는『업무상질병 재해자』로 분류하고, 설비사고 또는 일시적 작업수행 오류로 급성중독·손상을 입은 경우에는『업무상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5) “산소결핍 및 이상기압 등 주위환경 요인에 의한 질식 또는 질환”은 고소작업 또는 잠함작업 등에 지속적으로 종사함에 따라 발생된 경우에는『업무상질병 재해자』로 분류하고, 설비사고 또는 일시적인 작업수행, 행위 등으로 발생된 경우에는『업무상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6) 그 밖에 재해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사고 재해자』로 분류하고,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

5. 산업재해 특성 분석항목

산업재해 발생원인의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5.1 사업장 특성 분석항목

(1) 사업자등록번호
(2) 산재관리번호
(3) 사업장명
(4) 소재지
(5) 산업(업종)
(6) 규모(근로자수)

(7) 행정구역
(8) 사업장형태
(9) 공사종류
(10) 공사금액
(11) 공사기간
(12) 공정률

5.2 재해자 분석항목

(1) 국적
(2) 성별
(3) 연령
(4) 직업
(5) 고용형태
(6) 근무형태
(7) 동종업무 근속기간(입사근속기간)

5.3 재해발생 특성 분석항목

(1) 재해발생일시
(2) 재해발생시점
(3) 재해종류
(4) 피해현황(인적, 물적, 조업정지)
(5) 안전방호조치
(6) 안전방호조치여부
(7) 개인보호조치
(8) 개인보호조치여부
(9) 작업형태
(10) 발생형태
(11) 기인물(가해물)
(12) 작업지역・공정(평소수행, 재해당시수행, 재해유발)
(13) 작업내용(평소수행, 재해당시수행, 재해유발)
(14) 불안전한 상태

(15) 불안전한 행동
(16) 떨어짐 장소
(17) 떨어짐 높이
(18) 감전전압
(19) 점화원
(20) 상병종류
(21) 상병부위
(22) 근로손실일

5.4 산업재해 특성 기록표 작성 및 관리방법

산업재해 특성 항목은 분석 목적 및 사업장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특성 항목 중 필요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 기록 및 분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예시는 <표 1>을 참조한다.

<표 1> 산업재해 특성 기록표

Ⅰ. 사업장 특성 분석항목

사업자등록번호				산재관리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업 종		근로자(명)		지역(행정구역)		사업장형태		
건설업만 기재	공사종류			공사금액(백만원)				
	공사기간			공정율(%)				

Ⅱ. 재해자 특성 분석항목(동일재해로 재해자가 다수 발생된 경우 재해자별로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직업	
고용형태		근무형태		입사일	년 월 일	동종업무근속기간	년 월

(주)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란에 성별, 연령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음

Ⅲ. 재해발생 특성 분석항목

◎ 재해현황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재해발생시점		재해종류	
인적피해	사망 ( )명, 부상 ( )명	물적피해	백만원	조업정지일	
안전방호조치	□대상 (설비:) □비대상	안전방호조치여부	□조치 □미조치		
개인보호조치	□대상 (장비:) □비대상	개인보호조치여부	□조치 □미조치		
작업형태	□단독 □공동( )명	발생형태		기인물(물질)	( )
재해유발 작업지역.공정, 내용					
불안전한상태					
불안전한행동					

발생형태별추가정보	『떨어짐』 장소		『떨어짐』 높이	m	감전전압	kV	점화원	

◎ 재해자현황(동일재해로 재해자가 다수 발생된 경우 재해자별로 작성)

상병종류		상병부위		가해물		근로손실일	
평상시 수행 작업지역.공정, 내용							
재해당시 수행 작업지역.공정, 내용							

6. 사업장 특성 분석항목의 분류체계 및 기준

6.1 산업

분류체계 및 기준은 통계청고시 제 2024-2호『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6.2 규모

6.2.1 기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6.2.2 분류체계

<표 2> 규모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5인 미만	
1	5인 이상 ~ 10인 미만	
2	10인 이상 ~ 20인 미만	
3	20인 이상 ~ 30인 미만	
4	30인 이상 ~ 50인 미만	
5	50인 이상 ~ 100인 미만	
6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7	300인 이상 ~ 500인 미만	
8	500인 이상 ~ 1,000인 미만	
9	1,000인 이상	
z	분류불능	

6.3 행정구역

6.3.1 기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법정동, 행정동 코드를 기초한 통계청의 『행정구역분류』를 준용하되, 산업안전보건행정의 기반이 되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사무소(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별 분류체계도 병행하여 유지한다.

6.3.2 분류체계

(1) 『행정구역』: 통계청 『행정구역분류』를 준용한다.
(2) 『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직제를 준용한다.
(3)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제를 준용한다.

6.4 사업장 형태

6.4.1 기준

사업장간 업무관계를 정의한 것으로 다수 사업장이 동일 지역내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수급(하청)업체라 하더라도 별도의 지역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6.4.2 분류체계

<표 3> 사업장형태 분류코드

코드	코 드 명	해 설
0	도급(원청)업체	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한 경우 포함
1	수급(하청)업체	도급업체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
2	관계수급업체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업체

6.5 공사종류

6.5.1 기준

수급(하청)업체의 개별공사가 아닌 도급(원청)업체의 공사종류를 정한다.

6.5.2 분류체계

<표 4> 공사종류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건축공사	아파트, 연립 등 주거.숙박시설, 상업.공공시설, 병원.학교.후생시설, 공장건물 등의 공사 분류
1	토목공사	철도, 지하철, 도로, 교량, 터널, 항만, 댐, 부지조성 등 택지개발, 상.하수도, 관로 등의 공사 분류
2	복합공사	공항활주로, 종합레저시설(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대공원, 영화관, 실내수영장) 등의 공사 분류
3	플랜트공사	공장건물이 아닌 석유화학플랜트, 금속제조설비, 비금속제조설비, 일반산업설비,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소, 담수시설 등의 공사 분류
4	전기통신공사	송.배전공사, 통신공사, 옥내.외 전기공사, 신호, 계장공사, 전기기기설치 등의 공사 분류
9	기타공사	기타 분류되지 않은 공사
z	분류불능	

6.6 공사금액

6.6.1 기준

수급(하청)업체별 공사금액이 아닌 발주처로부터 도급(원청)업체가 수주 받은 총 공사금액으로 분류한다.

6.6.2 분류체계

<표 5> 공사금액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3억원 미만	
1	3억 ~ 20억원 미만	
2	20억 ~ 50억원 미만	
3	50억 ~ 120억원 미만	
4	120억 ~ 300억원 미만	
5	300억 ~ 500억원 미만	
6	500억 ~ 1,000억원 미만	
7	1,000억원 이상	
z	분류불능	

6.7 공사기간

6.7.1 기준

수급(하청)업체의 단위공정별 공사기간이 아닌 도급(원청)업체의 공사기간을 정한다.

6.7.2 분류체계

<표 6> 공사기간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1개월 미만	
1	1개월 이상 ~ 2개월미만	
2	2개월 이상 ~ 3개월미만	
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	6개월 이상 ~ 1년 미만	
5	1년 이상 ~ 3년 미만	
6	3년 이상	
z	분류불능	

6.8 공정률

6.8.1 기준

재해발생 시점의 단위공정별 공사 진척도가 아닌 해당 건설현장의 전체공사 진척도를

정한다.

6.8.2 분류체계

<표 7> 공정률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5% 미만	공사시작전 재해(측량 등 준비과정)도 포함
1	5% 이상 ~ 10% 미만	
2	10% 이상 ~ 30% 미만	
3	30% 이상 ~ 50% 미만	
4	50% 이상 ~ 70% 미만	
5	70% 이상 ~ 90% 미만	
6	90% 이상 ~ 공사완료 전	준공 이전
7	공사완료 이후	준공 후
z	분류불능	

7. 재해자 특성 분석항목의 분류체계 및 기준

7.1 국적

국적은 국제전화의 국가코드를 준용한다.

7.2 성별

<표 8> 성별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남	
1	여	
z	분류불능	

7.3 연령

7.3.1 기준

재해자의 재해발생 당시 만(滿) 나이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7.3.2 분류체계

<표 9> 연령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18세 미만	
1	18세 ~ 24세	
2	25세 ~ 29세	
3	30세 ~ 34세	
4	35세 ~ 39세	
5	40세 ~ 44세	
6	45세 ~ 49세	
7	50세 ~ 54세	
8	55세 ~ 59세	
9	60세 이상	
z	분류불능	

7.4 직업

분류체계 및 기준은 통계청고시 제2024-2호『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준용한다.

7.5 고용형태

7.5.1 기준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의 형태를 정한다.

7.5.2 분류체계

<표 10> 고용형태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각종 수혜를 받는 자)
1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계절제 등 단기 계약직을 말함)
2	일용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9	기타	시간제, 무급가족종사자, 교육.훈련생, 자영업자 등
z	분류불능	

7.6 근무형태

7.6.1 기준

평소 근로자의 작업수행시간 등 업무수행 형태를 정한다.

7.6.2 분류체계

<표 11> 근무형태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정상(주간)근무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경 전후에 퇴근하는 형태
1	교대근무	동일 작업이 2, 3개조에 의해 지속적으로 순환되어 수행되는 형태 - 1개월 이상을 주기로 근무형태가 바뀌는 경우는 제외
9	기타	고정적인 야간업무(1개월 이상인 경우) 등의 형태
z	분류불능	

7.7 동종업무 근속기간(입사근속기간)

7.7.1 기준

(1) 「동종업무 근속기간」은 재해자가 과거에 근무하였던 회사부터 재해발생당시 근무중인 회사에서 동일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한 총 근무기간(재해발생일 까지)을 정한다. 다만, 과거 근무회사의 업무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악 가능한 경력만을 산정하여 정한다.

(2) 「입사근속기간」은 재해발생당시 소속 회사의 입사일로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근속한 기간을 정하며, 동일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7.7.2 분류체계

<표 12> 동종업무 근속기간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6개월 미만	
1	6개월 ~ 1년 미만	
2	1년 ~ 2년 미만	
3	2년 ~ 3년 미만	
4	3년 ~ 4년 미만	
5	4년 ~ 5년 미만	
6	5년 ~ 10년 미만	
7	10년 이상	
z	분류불능	

8. 재해발생 특성 분석항목의 분류체계 및 기준

8.1 재해발생 일시

8.1.1 기준

업무상사고 재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 하며, 업무상질병 재해자는 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진단 시점으로 분류한다.

8.1.2 분류체계

(1) 『재해발생 월』

<표 13> 재해발생 월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1	1월	
02	2월	
03	3월	
04	4월	
05	5월	
06	6월	
07	7월	
08	8월	
09	9월	
10	10월	
11	11월	
12	12월	
zz	분류불능	

(2) 『재해발생 요일』

<표 14> 재해발생 요일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월요일	
1	화요일	
2	수요일	
3	목요일	
4	금요일	
5	토요일	
6	일요일	
z	분류불능	

(3) 『재해발생 시각』

<표 15> 재해발생 시각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1	0 ~ 2시전	
02	2 ~ 4시전	
03	4 ~ 6시전	
04	6 ~ 8시전	
05	8 ~ 10시전	
06	10 ~ 12시전	
07	12 ~ 14시전	
08	14 ~ 16시전	
09	16 ~ 18시전	
10	18 ~ 20시전	
11	20 ~ 22시전	
12	22 ~ 24시전	
zz	분류불능	

8.2 재해발생 시점

8.2.1 기준

재해가 발생한 시점을 작업과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8.2.2 분류체계

<표 16> 재해발생 시점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작업전	
1	정규작업중	
2	잔업(연장근무)중	
3	휴일근무 중	
4	출.퇴근 등 이동 중	출.퇴근, 식사, 출장.파견 등 이동 시점을 분류 ※ 화물운송 등 업무자체가 이동인 경우 제외
5	식사.휴식 중	
9	기타	
z	분류불능	

8.3 재해종류

8.3.1 기준

재해가 발생한 유형을 분류한다.

8.3.2 분류체계

<표 17> 재해종류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작업 중 재해	사업, 작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활동 중에 발생된 재해로 건설현장, 교통, 광산재해는 제외 ※ 단순히 자체적 또는 외부업체의 A/S 차원에서 수행되는 기계정비, 부품교체, 전기설비 등의 유지.보수작업은 포함한다.
01	사업장내 작업 중 재해	
02	사업장외 작업 중 재해	농사, 벌목, 공공근로, 배달 등
1	건설현장 재해	건축.토목.구조물의 신축.증설.보수 공사, 도로공사, 기계설비 설치.해체공사, 전기통신공사를 수행하던 중의 재해 ※ 단순한 기계정비, 부품교체 등 유지.보수 작업 및 교통재해, 광산재해는 제외한다.
2	교통재해	도로교통법, 해상교통안전법, 항공법, 교통안전법 등에 규정된 재해
21	육상교통재해	
211	사업장내 교통재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서 사업장내 도로상에서 발생된 재해를 분류한다. ※ 사업장의 작업장 등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된 것은 제외
212	사업장외 교통재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서 사업장 밖의 도로(비포장도로 포함)에서 발생된 재해로서 출.퇴근 재해도 포함한다. ※ 사업장 밖의 도로라 하더라도 건설공사의 수행 중 발생된 경우는 사업장내 교통재해로 분류
22	수상 교통재해	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재해(강, 바다) ※ 선박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재해는 제외 (어획 등 선박 내 작업)
23	항공 교통재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재해 ※ 항공기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재해는 제외(항공기 청소, 수리 등)
3	광산재해	채광, 채석, 채취, 유전 등 광산, 강, 해양 등에서의 작업재해
4	작업 외 재해	체육행사 등 직접적인 작업과 관련이 없는 재해
5	업무상 질병	
9	기타 재해	
zzz	분류불능	

8.4 피해현황(인적, 물적, 조업)

8.4.1 기준

동일 재해발생에 따른 인적피해와 설비파손, 조업중단 등의 물적피해를 분류하고, 물적피해의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차질비용은 당해 공정 조업차질일수에 해당 사업장의 당해 공정 일일매출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8.4.2 분류체계

(1) 『인적피해』: 동일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자 수

<표 18> 인적피해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부상	
1	사망	
2	부상 및 사망 동시발생	
z	분류불능	

(2) 『물적피해』: 설비파손 피해금액과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차질비용

<표 19> 물적피해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물적손실 없음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4	1,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5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	10억원 이상	
z	분류불능	

(3) 『생산・조업정지 일』

<표 20> 생산・조업정지 일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없음	
1	1일 미만	
2	1일 이상 ~ 1주 미만	
3	1주 이상 ~ 1월 미만	
4	1월 이상 ~ 3월 미만	
5	3월 이상 ~ 6월 미만	
6	6월 이상 ~ 1년 미만	
7	1년 이상	
8	폐업, 전업, 전부파손 등	
z	분류불능	

8.5 안전방호조치

8.5.1 기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격리, 밀폐, 차단, 정지, 경보 등의 보호조치 설비로서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재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설비・기계 등에 설치하여 당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설치대상」에 한하여 적용한다.

8.5.2 분류체계

<표 21> 안전방호조치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통행로, 작업지역 방호조치	방책, 차도분리대, 대피용 피난처 등 유해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을 목적으로 한 방호조치이며, 사람이 떨어지거나 물체가 날아오는 위험 및 동력기계 위험부 접촉 방호는 별도코드로 분류한다.
1	떨어짐, 깔림, 맞음재해 등 방호조치	사람이 떨어지거나 또는 물체가 넘어지거나 날아와서 발생하는 재해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분류한다.
2	동력기계 위험부 방호조치	동력기계의 작동부위 또는 동력전달 위험부위에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분류하되 인터록 등의 시스템장치 형태의 기능을 갖는 조치는 별도코드로 분류한다.
3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조치	프레스 및 전단기(단, 유해위험기계기구에 한한다)의 방호조치를 분류한다.
4	비상정지.인터록장치 및 점검 등의 작업시 방호조치	동력기계 위험부 방호조치를 제외한 기계.설비, 시설 등의 방호조치로서 비정상적 작업 또는 작동의 방지, 재해확산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방호조치를 분류한다.
5	이상압력, 온도 등의 방호조치	온도, 압력, 속도 등 정상적인 작업조건과 상이하게 운전되는 경우 등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조업을 유지하는 간접방호조치이며 해당 경보시설까지 포함된다,
6	작업환경적 요인의 방호조치	유해물질, 유해광선, 소음.진동, 고열.한냉 등 작업환경에 대한 방호조치이며, 기계.설비사고에 의한 누출로 발생된 환경위험 요인 및 개인보호구는 본 코드에서 제외한다.
7	특정재해 안전방호조치	상기 코드로 분류되지 않는 화재.폭발, 감전, 무너짐 재해 등 특정사고의 복합적인 안전방호조치 불량으로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 분류한다.
9	기타 안전방호조치	안전방호조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으나 상기 코드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분류한다.
z	분류불능	분류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에 분류한다.

8.6 안전방호조치여부

8.6.1 기준

안전방호시설의 설치 또는 미설치 등의 조치실태를 분류하는 것으로 당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설치대상」에 한하여 적용한다.

8.6.2 분류체계

<표 22> 안전방호조치여부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조치	방호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
1	미조치	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8.7 개인보호조치

8.7.1 기준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이 착용하는 장비 또는 기구로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재해자가 당해 작업수행시 착용함으로써 재해 및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착용대상」에 한하여 적용

8.7.2 분류체계

<표 23> 개인보호 조치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안전모	
1	안전대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안면보호구	보안경, 보안면
5	호흡용보호구	방진, 방독, 송기마스크
6	귀마개.귀덮개	
7	전신보호 장비	방열, 방한, 내산성, 내알카리성 보호의 등
9	기타	
z	분류불능	

8.8 개인보호 조치여부

8.8.1 기준

개인보호장비의 착용 또는 미착용 등의 조치실태를 분류하는 것으로 당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착용대상」에 한하여 적용한다.

8.8.2 분류체계

<표 24> 개인보호조치여부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조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였으나 착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1	미조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8.9 작업형태

8.9.1 기준

동일 작업지역·공정에 투입한 인원과 작업방식이 아닌 재해발생당시 동일한 작업 수행을 목적으로 투입한 인원과 작업방식을 말한다.

8.9.2 분류체계

<표 25> 작업형태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단독작업	
1	공동작업	
z	분류불능	

8.10 발생형태

8.10.1 정의

(가) “발생형태”란 재해 및 질병이 발생된 형태 또는 근로자(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기인물과 상관된 현상을 말한다.

(나) “떨어짐(높이가 있는곳에서 사람이 떨어짐)”이라 함은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다) “넘어짐(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이라 함은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라) “깔림・뒤집힘(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이라 함은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를 말한다.

(마) “부딪힘(물체에 부딪힘)・접촉”이라 함은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를 말한다.

(바)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라 함은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 “끼임(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이라 함은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를 말한다.

(아) “무너짐(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라 함은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를 말한다.

(자)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이라 함은 물체의 취급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동작 등 신체동작(반응)에 의한 경우나,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올리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동작을 말한다.

(차) “이상온도 접촉”이라 함은 고・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를 말한다.

(카) “화학물질 누출·접촉”이라 함은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한 경우를 말한다.

(타) “산소결핍”이라 함은 유해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환경에 노출되었거

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 호흡기능이 불충분한 경우를 말한다.

(파) “화재”라 함은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하) “폭발·파열”이라 함은 건축물, 용기내 또는 대기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파열은 배관, 용기 등이 물리적인 압력에 의하여 찢어지거나 터진 경우로서 폭풍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거) “감전”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충전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를 말한다.

(너) “폭력행위”라 함은 의도적인 또는 의도가 불분명한 위험행위(마약, 정신질환 등)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폭행을 말하며, 협박・언어・성폭력 등을 포함한다.

(더) “절단·베임·찔림”이라 함은 사람과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서 칼 등 날카로운 물체의 취급 또는 톱·절단기 등의 회전날 부위에 접촉되어 신체가 절단되거나 베어진 경우를 말한다.

(러) “빠짐·익사”라 함은 수중에 빠지거나 익사한 경우를 말한다.

(머) “사업장내 교통사고”라 함은 사업장내의 도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를 말한다.

(버) “사업장외 교통사고”라 함은 사업장외의 도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와 해상·항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교통사고를 말한다.

(서) “체육행사 등의 사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체육행사·워크숍, 회식 등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어) “동물상해”라 함은 동물에 의해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로 동물(개·소·말 등)에 물리거나 차이는 경우 등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8.10.2 분류기준

(1) 기본기준

(가) 산업재해가 발생된 형태를 우선적으로 파악·분류하되, 사고가 상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는 기인된 물체 또는 물질을 확인하고 재해자에게 어떻게 접촉 또는 폭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나) 단일 사고로 여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상해결과가 재해자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고형태에 의하여 분류한다.

(2) 복합적 현상에 의한 발생형태 분류기준

(가) 1차 원인에 의한 현상이 상해결과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1차 원인의 현상을 발생형태로 분류한다.

(나) 1차 원인의 현상으로의 분류가 부적절하거나 사망·부상원인 및 상해결과 등 직접적 요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거 분류한다.

① 폭력행위, 폭발, 화재, 감전, 화학물질 누출·접촉 순으로 특정 사고를 우선하여 분류

② 재해정도를 고려 가장 우선적으로 재해예방대책이 요구되는 현상

③ 1차 원인(즉, 발단이 된 현상)

(3) 분류시 유의사항

(가) 두 가지 이상의 발생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의 경우는 상해결과 또는 피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한다.

① 재해자가「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부위가「절단」된 경우에는「끼임」으로 분류한다.

②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넘어짐」으로 인하여 사람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떨어짐」으로 분류한다.

③ 재해자가「넘어짐」또는「떨어짐」으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에는「빠짐·익사」로 분류한다.

(나) 기계의 구동축, 회전체 등 주요 부위의 파단, 파열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를 입힌 물체의 운동형태에 따라 「맞음」 재해로 분류한다.

(다) 「떨어짐」과「넘어짐」재해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사고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에는 「떨어짐」으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에는 「넘어짐」으로 분류한다.

② 신체가 바닥면과 접해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등 구조물의 높이가 보폭(약 6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체가 구조물과 바닥면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떨어짐』으로 분류하고, 그 보폭 미만인 경우는 『넘어짐』으로 분류한다.

(라) 「맞음」,「이상온도 접촉」또는 「화학물질 누출·접촉」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물체 또는 물질이 떨어지거나 날아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맞음」으로 분류한다.

② 고·저온 물체 또는 물질이 떨어지거나 날아와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상온도 접촉」으로 분류한다.

③ 떨어지거나 날아온 물체 또는 물질의 특성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화학물질 누출·접촉」으로 분류한다.

(바) 「폭발」과「화재」의 분류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발생형태를「폭발」로 분류한다.

8.10.3 분류체계

<부록 1> 발생형태 분류코드를 참조한다.

8.11 기인물(가해물)

8.11.1 정의

(가) 기인물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운동, 위치, 열, 전기

등)을 지닌 기계・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한다.

(나) 『2차 기인물』은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된 재해에 있어서 기인물을 유발(가속화)시켰거나 재해 또는 특정물질에 노출을 유도한 것 즉, 간접적 영향을 끼친 물체, 사람, 에너지원, 환경요인을 말한다.

(다) 『가해물』은 근로자(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기계, 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한다.

8.11.2 분류기준

(1) 기본기준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안전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재해예방대책을 고려하여 다음 순서로 분류한다.

(가) 재해발생 주요인이 사물이면 그 사물을 기인물로 한다.

(나) 재해발생 주요인이 사람이나 기인물이 있으면 그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운전 중 한눈을 팔다 전주에 충돌 (기인물은 차량)

※ 조작 및 취급하던 물체를 우선한다.

(다) 재해발생 주요인이 사람이고 기인물이 존재하지 않고 가해물이 있으면 그 가해물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손에 들고 있던 운반물을 놓침(기인물은 운반물)

(라) 재해발생 주요인이 사람이고 기인물, 가해물이 되는 사물이 없으면 사람으로 분류한다.

(예) 외부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걷다가 발목을 겹질림(기인물은 사람)

(마) 재해발생 주요인이 사람이 아니고 불안전한 상태도 없으나 기인물이 있는 경우는 그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자연재해, 천재지변

(2) 분류시 유의사항

(가) 「설비・기계, 휴대용 및 인력용 기계기구, 교통수단(이하 “완성품”이라 한다)」과 「부품・부속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사고 당시 완성품의 구성요소가 부착상태 또는 완성품의 용도, 주기능과 관련하여 정상 사용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완성품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용접작업 중 용접장치의 화염에 기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는 동 설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기인물은 용접장치로 한다.

다만, 부착된 경우라도 완성품의 용도, 주기능과 무관하게 일부 부속물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부품・부속물」로 분류한다.

(예) 작업장 내 통로 이동 중 기계의 정상적인 작업용도 및 범위와 관계없이 동력전달부에 접촉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기인물은 기계의 부속물인 동력전달부로 한다.

② 부품・구성요소가 그 완성품과 분리된 상태 또는 해체중인 작업에서 재해를 유발한 경우는 부품・부속물로 분류한다.

(예) 부착상태로 수리중인 경우는 전체 설비・기계기구, 차량을 기인물로 하되, 해체하던 중인 경우는 부품・부속물을 기인물로 한다.

(나) 다중물체에 동시 혹은 연쇄적으로 접촉하여 직접적인 기인물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이동물체와 고정물체 사이의 접촉이면, 이동물체를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이동차량에 치여 기둥에 부딪힌 경우는 차량이 기인물이 된다.

② 이동물체와 이동물체 사이의 접촉이면 어느 쪽의 잘못인가에 따라 판단하되,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피해를 입은 쪽”(피해자)을 기인물로 한다.

(예) 트럭과 지게차가 운전 중 정면충돌하여 지게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는 지게차가 기인물(가해물 트럭)

(다) 건축물・구조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재해가 건축물・구조물의 특정부분(창, 문, 계단)에 의하여 발생했다면 건축물・구조물 전체로 분류하지 않고 그 특정부분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② 건물・구조물의 보수・해체 또는 가설물의 설치・해체 작업중인 경우는 기계・설비와 달리 부품・부속물의 영향보다는 공사중인 건물・구조물・가설물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므로 「건물・구조물・가설물」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라) 교통수단에 의한 재해의 기인물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교통수단에 탑승한 상태이거나 교통수단에 의하여 다친 경우는 발생형태에 관계없이 그 교통수단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특히, 교통수단이 운행 중인 상태이면, 기후(눈・비), 바람, 돌발물체 등 외부 영향이 있는 경우라도 교통수단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불도저가 전복된 경우 불도저를 지탱하고 있던 노견의 문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도저운전불량 등의 불안전 요소가 많으므로 불도저가 기인물

② 다만, 교통수단의 수리 또는 화물적재작업 등 교통수단의 용도・목적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재해가 발생된 경우는 해당 부속물 또는 다른 불안전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요인이 있는 경우는 해당요인을 기인물로 요인이 없는 경우는 교통수단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차량적재 작업과정에서 적재된 중량물의 결속을 위하여 고무로프를 당기던 중 고무로프가 파단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무로프를 기인물로 한다.

(마) 재료 등의 기인물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중량물・적재물 취급은 중량물의 포장, 꾸러미 등 중량물을 담은 용기, 기구 등을 기인물로 분류(인력용 수레, 대차를 포함)한다. 다만, 기계, 가구 등 독립된 중량물의 취급 중에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기계, 가구 등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② 재료를 기인물로 선택하는 경우는 설비・기계 등의 부품・부속물, 가구・용기・용품, 건물・구조물의 구성요소 등 다른 분류코드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분류한다.

(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일반적으로 특정 화학물질명이나 그 화학물질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부록2>의 화학물질코드 「중분류 51~56」으로 분류하고, 제품의 상태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해당하는 코드「중분류 57」로 분류한다.

② 상세정보 부족한 차량의 배기가스, 용광로·소각로·화로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55401 일산화탄소」로 분류하고, 화재발생에 따른 복합적인 연소가스, 연기 등은 「81505 화염, 화재연기」로 분류한다.

(사) 사람을 기인물로 분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해자의 신체상태(육체, 정신), 외부의 다른 영향 없이 재해자의 의지에 의한 신체동작(과다동작 제외) 또는 스트레스로 발생된 경우

(예) 불안전한 요인이 없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며, 중량물 취급 등 다른 불안전한 요인에 기인한 것은 당해 불안전한 요인을 기인물로 한다.

② 재해자 자신이 아닌 동료, 환자 등 제3자에 의한 상해 또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

(아)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물체·물질이 재해를 유발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화합물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관여한 경우는 두 가지 물질을 포괄하는 '다중' 코드를 선택한다.

② 두 물체·물질의 취급방법 오류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람을 기인물로 하지 않고 두 물체·물질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 에너지 또는 동력을 지닌 물체 또는 물질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물과 황산의 혼합방법 잘못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황산을 기인물로 분류

③ 두 물체·물질이 동일 코드내에 속하는 경우는 그「해당코드내의 기타~코드」로 분류한다.

④ 두 물체·물질이 동일 코드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두 물체·물질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코드의 기타~코드」로 분류한다.

(자) 대기조건 등 자연현상은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파악되는 유일한 기인물인 경우에 한하여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날씨 관련요인으로 재해가 기인되었으나 또 다른 특정 물체·물질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그 특정 물체·물질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예) 바람이 불어 날린 톱밥이 근로자의 눈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톱밥」이 기인물이 된다.

② 자연현상, 대기 및 환경조건의 「고·저온」은 작업환경 등의 대기조건인 경우에 분류하고, 고·저온 물체 또는 물질에 의한 재해의 경우는 그 특정 물체·물질을 기인물로 분류한다.

(3) 2차 기인물 또는 가해물의 분류 및 기인물과의 관계

(가) 2차 기인물 및 가해물의 분류는 전술한 '기인물의 분류체계'를 적용한다.

(나) 기인물이 움직이는 물체인 경우 이런 기인물을 발생시킨 또는 기인물을 가속화시킨 기계·도구·설비를 2차 기인물로 분류한다.

(다) 비자발적인 동작으로 근로자가 끼이거나 감긴 경우 상해를 입힌 구조물·설비를 기인물 및 가해물로 분류하고 비자발적인 동작을 유발한 물체를 2차 기인물로 분류한다.

(주) 비자발적인 동작을 유발한 물체란 근로자를 기계에 끼이거나 감기게한 매개물 즉, 옷·장신구 등을 말한다.

(예) 자발적 동작으로 프레스에 가공물을 투입하는 작업 중 끼이게 되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인물 및 가해물이 모두 프레스

(라) 기인물이 전염성 물질인 경우는 그 물질을 옮긴 물체나 사람, 동·식물 또는 식품 등을 2차 기인물로 분류하며, 전염성 물질을 가해물로 분류한다. 다만, 배양조 등 설비사고로 전염성 물질에 감염된 경우는 해당설비를 기인물로 물질명을 2차 기인물 및 가해물로 분류한다.

(마) 유해물질접촉 또는 질식이 설비사고에 의한 경우는 파열 또는 누설 설비를 기인물로

분류하고 물질명은 2차 기인물 및 가해물로 분류한다.

(예)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용기・설비의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인물과 가해물을 동일하게 물질로 분류한다.

(바) 화재・폭발사고에 따른 재해는 가연물이 누출된 설비를 기인물로, 가연물은 2차기인물(물질)로 가해물은 화염, 연기, 파편 등으로 분류하고, 점화원은 별도 코드로 분류한다.

(예) 다만, 위험물의 취급용기・설비에 결함이 없거나(정상 취급이 개방된 상태 포함) 위험물의 직접적인 취급과정에서 재해가 발생된 경우는 기인물을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가해물은 화염・연기・파편・폭발압 등으로 분류한다.

(4) 발생형태와 연계한 기인물, 가해물의 분류

동 분류기준은 앞에서 정한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떨어짐』 및 『넘어짐』재해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떨어짐』 및 『넘어짐』재해는 떨어지거나 넘어진 장소, 작업바닥을 기인물로 분류하고, 떨어지거나 넘어지면서 충돌한 바닥, 지표면, 구조물, 적재물 등은 가해물로 분류한다.

② 의도적으로 떨어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같이 특별한 외부적 영향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람으로 분류한다.

(예) 체육활동・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재해

(나) 『부딪힘』 재해는 『부딪힘』재해를 일으킨 동력원(기계 등)을 기인물로 하고, 신체와 직접 부딪힌 물체는 가해물로 분류한다.

(예) 서로 다른 동력원이 상호 충돌한 경우는 「다중물체 접촉」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다) 『맞음』 재해는 물체를 지탱하고 있던 물체 또는 장소의 불안전한 상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재해를 일으킨 동력원 등을 기인물로 분류하고, 신체와 직접 접촉・부딪힌 물체는 가해물로 분류한다.

(예) 각재를 목재가공용 둥근톱으로 절단하는 작업중 절단편이 날아와 얼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맞음』 재해의 동력원인 둥근톱을 기인물로 분류하고 절단편은 가해물로 분류.

(라) 『끼임』 재해는 상호 물체간 협착 또는 감김 원인의 주체(운동물체)를 기인물 및 가해물로 분류한다.

(예) 『끼임』 재해가 기계 등의 주기능적인 작업점에서 발생된 경우는 해당기계를 기인물로 하되 주기능적인 작업점이 아닌 일부 부속물에 접촉된 경우에는 기계부품, 부속물을 기인물 및 가해물로 분류한다.

8.11.3 분류체계

<부록 2> 기인물 분류코드를 참조한다.

8.12 작업지역·공정

8.12.1 정의

작업장 및 현장에서 수행되는 주요 작업을 기능별로 포괄하여 구분한 지역 및 공정을 말하며,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한 작업지역·공정, 재해당시 수행 중이던 작업지역·공정, 평소에 수행하던 작업지역·공정을 구분하여 분류한다.

8.12.2 분류체계

<표 26> 작업지역·공정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원재료 생산지역.공정	금속,비금속,화합물,종이 등 원재료를 생산하는 지역이며, 원재료를 구입 또는 별도의 지역(공장동 등)으로 이송하여 원재료를 가공 하는 경우에는 "1번" 또는 "2번"코드로 분류
1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제조지역.공정	원재료를 이용하여 조립금속제품이나 기계, 장비(선박, 전기기계는 제외하여 "2번"코드로 분류)를 제조하는 지역
2	특정제품 제조지역.공정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를 제외한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지역으로 생산되는 최종 제품으로 분류
3	저장.운송, 교통.보행지역	제조,건설지역 내의 보행지역도 해당
4	토목, 건축 플랜트 공사지역.공정	동 지역공정 코드는 신설 및 증설공사에 대해서만 분류하며, 제조 등 기타 지역공정 내에서 소규모로 발생되는 유지보수작업은 제외
5	육지.해양.대기 및 경작지역	제조,건설,교통,수송,운반,저장지역은 제외
6	에너지공급, 지원부속지역	
7	사무, 서비스, 주거지역	
9	기타	

8.12.3 분류기준

(1) 기본기준

(가) 재해자 및 작업자가 재해당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지역・공정을 기준으로 하되, 제조지역은 크게 「원재료 생산지역・공정」,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제조지역・공정」, 「특정제품 제조지역・공정」으로 제조 당시 생산품의 특성 및 가공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나) 「토목, 건축, 플랜트 공사지역・공정」은 신축되거나 증설되는 현장에 한하며, 건설작업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져 지역이 동일하므로 당해 건설 현장의 공정에 따라 지역・공정을 분류한다.

(다) 「저장・운송, 교통・보행지역」, 「에너지공급, 지원부속지역」 등은 당해 지역이

제조, 건설공사 및 서비스지역에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해당 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2) 분류시 유의사항

(가) 「원재료 생산지역・공정」은 금속, 비금속, 화합물, 펄프 및 종이 등 제품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제조, 생산하는 지역・공정이며, 생산된 원재료를 2차 가공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제조지역・공정」또는「특정제품 제조지역・공정」으로 분류한다.

(나)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제조지역・공정」을 제외한 특정한 생산공정으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선박구조물을 제조하는 지역・공정은「특정제품 제조지역・공정」으로 분류한다.

(다) 천정크레인 등 대형구조물을 기존의 제조・생산지역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생산지역으로 분류하며, 기존의 제조・생산지역 내가 아닌 사업장내의 별도 구획된 지역에 해당 구조물을 신설, 증설작업 하는 경우에는 「토목, 건축, 플랜트 공사지역・공정」으로 분류한다.

(라) 폭발성, 인화성, 발화성, 산화성, 가연성, 부식성, 독성 물질 등의 위험물질 저장소 또는 주유소, 가스 충전소 등의 주유・충전시설은 「저장・운송, 교통・보행지역」으로 분류하고, 저장소 또는 주유소 내의 사무실은「사무, 서비스, 주거지역」으로 분류한다.

(마) 완성된 건물 계단 또는 신・증축중인 건물 계단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지역, 공사지역으로 분류하지 않고 「저장・운송, 교통・보행 지역」으로 분류한다.

(바) 사업장내 차도나 아파트 단지내 차도(단지와 단지사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차도에 한함)는 「저장・운송, 교통・보행 지역」으로 분류한다.

(사) 교통수단 운행과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교통수단이 운행되었던 해당 지역 즉 「육지・해양・대기 및 경작지역」으로 분류하나, 교통수단 내부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저장・운송, 교통・보행 지역」으로 분류한다.

(아) 「육지, 해양, 대기 및 경작지역」은 제조, 건설, 교통・보행, 저장・운송 등 다른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와, 육림지 또는 경작지, 채석장,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지역 등을 동 코드로 분류한다.

(자) 채석장과 별도의 지역에서 원석을 파쇄, 분쇄, 가공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지역·공정은 원석을 2차 가공하는 제조 지역·공정과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특정제품 제조지역·공정」으로 분류한다.

(차) 송전선로로서 154 kV 345 kV, 765 kV의 전압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지역에서의 보수·점검작업은 「에너지공급, 지원부속지역」으로 분류되나, 송전철탑 신설 및 해체의 경우에는 「토목, 건축, 플랜트 공사지역·공정」으로 분류한다.

(카) 제조지역 및 건축물 등의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전기설비의 보수·점검 작업은 「에너지공급, 지원 부속지역」으로 분류하지 않고, 보수·점검 작업이 이루어지는 해당 제조지역, 해당 건축물 지역으로 분류한다.

(타) 제조지역 및 저장·운송, 사무·서비스 지역 등에서 수행되는 각종 정비 및 수리 작업은 해당 지역·공정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공무반, 정비소 또는 자영형태의 수리 센타에서 수행되는 정비 및 수리작업은 「에너지공급, 지원부속지역」으로 분류한다.

8.13 작업내용

8.13.1 정의

재해자 또는 작업자가 평소 또는 재해발생 당시 작업지역·공정에서 수행하고 있던 일을 말하며,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한 작업, 재해당시 수행 중이던 작업, 평소에 수행하던 작업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8.13.2 분류체계

<표 27> 작업내용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기계.설비의 설치.해체 및 보수.점검 등의 작업인 경우에는 물체의 가공작업(절단, 용접 등)이 이루어 질 경우라도 "3"코드로 분류한다.
1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	
2	운반, 상.하역 및 운반기계, 차량 등의 운전작업	
3	기계기구, 설비의 설치.해체 및 보전작업	
4	그 밖의 건설관련 작업	제조 및 서비스 등 건설현장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작업은 동 코드로 우선 분류하나, 건설현장지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경우는 “0”코드 내지 “3”코드 등 다른 코드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류한다.
5	채광, 벌목 등의 작업	다른 코드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분류한다.
6	행정, 의료 등 서비스작업	다른 코드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분류한다.
7	청소 및 부가적 작업	
9	기타 작업	

8.13.3 분류기준

(1) 기본기준

(가) 작업내용은 업종, 지역·공정과 무관하게 재해자 또는 동료 등 작업자가 직접적으로 수행한 작업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다만, 보수, 수리 및 공사관련 작업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작업지역·공정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나) 작업내용 분류시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을 우선 분류하며 「채광, 벌목 등의 작업」,「행정, 의료 등 서비스 작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분류한다.

(다) 제조, 건설 등 설치·보전 이외 작업이 주업무인 작업지역·공정에서 기계, 설비 등의 설치·보전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코드에 우선하여 「기계기구, 설비의 설치·해체 및 보전작업」으로 분류하나, 정비 및 수리작업이 주 업무로 수행되는 정비소, 수리센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기계기구, 설비의 설치·해체 및 보전작업」이외의 다른 코드로 우선 분류한다.

(라) 재해당시 제조지역에서 건축물 등의 보수작업과 관련하여 물체의 가공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 밖의 건설관련작업」이나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으로 우선 분류하며, 건설지역의 경우에는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등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그 밖의 건설관련 작업」으로 분류한다.

(마)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 또는 작업을 종료한 후 이동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행을 하고자 하였던 또는 수행했던 당해 작업으로 분류한다.

(2) 분류시 유의사항

(가) 부속품의 연결, 조립 등을 통해서 작동 할 수 있는 기계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작업은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으로 분류하며, 기계기구, 설비를 현장에 설치·해체하는 공사 성격의 작업은 『기계기구, 설비의 설치·해체 및 보전작업』으로 분류한다.

(나) 「채광, 벌목 등의 작업」의 경우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면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으로 우선 분류하고, 달리 분류할 수 없는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동 코드로 분류한다.

(다) 차량을 운전한 출·퇴근, 출장중의 재해는 「운반, 상·하역 및 운반기계, 차량 등의 운전작업」으로 분류하고, 교통수단이 아닌 단순이동 등에 의한 출·퇴근, 출장중의 재해는 「청소 및 부가적 작업」으로 분류한다.

8.14 『떨어짐』 장소

8.14.1 기준

『떨어짐』 재해가 발생된 장소를 말한다.

8.14.2 분류체계

<표 28> 떨어짐 장소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설비.기계	
1	적재물, 가구 등	
2	건축물, 구조물	통로, 난간 제외
3	가설물	통로, 난간 제외
4	통로, 난간 등	
5	운송수단	
6	사람, 동.식물	
9	기타	
z	분류불능	

8.15 『떨어짐』 높이

8.15.1 기준

『떨어짐』 재해가 발생한 당해 시설물의 높이를 말한다.

8.15.2 분류체계

<표 29> 떨어짐 높이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2미터 미만	
1	2미터 이상 ~ 3미터 미만	
2	3미터 이상 ~ 5미터 미만	
3	5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4	10미터 이상	
z	분류불능	

8.16 감전전압

8.16.1 기준

감전재해를 유발한 전기설비의 전압을 말한다.

8.16.2 분류체계

<표 30> 감전전압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380V 미만	
1	380V 이상 ~ 3.3kV 미만	
2	3.3kV 이상 ~ 22.9kV 미만	
3	22.9kV 이상	
z	분류불능	

8.17 점화원

8.17.1 기준

화재・폭발 사고를 발생시킨 발화원의 에너지 형태를 말한다.

8.17.2 분류체계

<표 31> 점화원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전기적 점화원	전기스파크, 정전기 등
1	열적 점화원	직화, 담뱃불, 용접불티.고온물체 등
2	기계적 점화원	절삭, 마찰, 충격 등의 스파크, 단열압축 등
9	기타	화학작용, 자연발화, 방화
z	분류불능	

8.18 불안전한 상태

8.18.1 기준

재해를 유발한 물적 측면의 상태로 설비・기계, 구조물, 작업공정 및 환경요인 등에 잠재된 불안전 요소를 말한다.

8.18.2 분류체계

<표 32> 불안전한 상태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물체 및 설비 자체의 결함	기계.설비, 구조물의 설계.조립 등 결함 또는 노후화 고장,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기계.설비의 기능이 불량한 경우 등을 분류
1	방호조치의 부적절	안전방호장치의 미설치 및 결함, 방호조치, 안전표지 등의 미설치 및 설치상태 불량 등을 분류
2	작업통로 등 장소불량 및 위험	통로, 작업발판 불량 및 작업장 바닥, 작업 공간 등의 작업 장소 위험요인을 분류
3	물체, 기계기구 등의 취급상 위험	물체의 저장.적재, 결속상태 불량 및 기계기구 취급 또는 사용상의 고유 위험을 분류 ※ 방호조치 관련 또는 자체결함이 있는 기계기구는 해당코드로 분류
4	작업공정.절차의 부적절	생산공정의 결함, 작업허가 등 절차, 수행방법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등을 분류 ※ 운반, 상하역 등 화물의 취급작업은 “물체 취급상의 위험”으로 분류
5	작업환경 등의 부적절	유해물질, 유해광선, 소음.진동, 고열.한냉, 조명 등 작업환경적인 요인 및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 환경적인 요인이 불량한 경우를 분류 ※ 기계.설비의 사고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불량해진 경우는 제외한다.
6	작업상의 기타 고유위험 요인	차량, 도로 등 공공의 위험요인, 체육.예술행사 등의 위험, 동식물의 사육.조련.재배 위험, 신체반응이나 동작상 결함 등을 분류
7	보호구 착용상태 및 성능불량	개인보호장비, 보호의 등의 미지급, 성능결함 또는 부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을 분류
9	기타	상기 코드에서 분류할 수 없는 경우 분류
z	분류불능	

8.19 불안전한 행동

8.19.1 기준

재해를 초래하게 된 작업자 자신 또는 동료의 행동에 잠재된 불안전한 요소를 말한다.

8.19.2 분류체계

<표 33> 불안전한 행동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설비.기계 및 물질의 부적절한 사용.관리	설비.기계의 안전.방호시설을 해지, 변경하여 결함이 있는 상태로 사용하였거나, 용도.용량이 맞지 않는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유해, 위험물질의 취급.관리가 부적절한 경우를 분류
1	구조물 등 그 밖의 위험방치 및 미확인	통로, 바닥, 구조물 및 장소 등의 불안전요인을 방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수행을 한 경우 등을 분류
2	작업수행소홀 및 절차 미준수	작업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업을 소홀히 수행한 경우를 분류
3	불안전한 작업자세	동력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물체를 취급하던 중 작업자세가 불안전하여 신체의 상해를 초래한 경우를 분류
4	작업수행 중 과실	작업자의 비의도적인 과실에 의한 경우를 분류
5	무모한 또는 불필요한 행위 및 동작	기계, 설비, 방호시설 등은 적정하였으나 의도한 상태에서 무모한 작업 등을 수행한 경우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위험장소로 접근한 경우를 분류
6	복장, 보호구의 부적절한 사용	착용상태가 불량하거나 부적절한 보호구선택 등을 분류
9	기타	음주과다, 강도에 폭행을 당한 경우 등 상기 코드에서 분류되지 않은 경우를 분류
z	분류불능	분류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를 분류

8.20 상병종류

8.20.1 기준

부상 또는 질병의 의학적 성질로서 주요한 신체적 상병특성을 말한다.

8.20.2 분류체계

<표 34> 상병종류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외상성 손상, 중독질환 및 장애	외상성 손상 및 장애, 외부인자의 영향, 중독질환을 분류 ※ 탈구, 골절, 염좌, 파열, 절단, 적출, 자상, 창상, 열상, 찰과상, 수포, 화상, 동상, 질식, 익수 등
1	전신성 질환 및 장애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비독성질환 또는 장애를 분류 ※ 빈혈, 파킨슨병, 난청, 손목터널증후군, 레이노드증후군, 백내장, 고혈압, 협심증, 뇌경색증, 당뇨병, 폐렴, 진폐증, 헤르니아, 간경화증, 관절염, 배병증, 건초염, 림프절염, 피부염
2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세균, 바이러스, 리켓치아, 진균, 기생충 등 5종류의 감염을 분류 ※ 바이러스성간염, 쯔쯔가무시병, 진균증, 콜레라, 대장염, 결핵, 진드기증
3	신생물 종양 및 암	세포증식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조직이 새롭게 성장하는 종양이나 신생물과 관련된 질환 또는 병태를 분류 ※ 백혈병, 지방종, 폐암, 간암, 성대용종
4	증상, 증후 및 불명확한 병태	증상,증후,또는 검사,임상,처치결과 나타난 이상을 분류 ※ 경련, 발작, 피로, 의식상실, 흉통
5	다발성 질환, 병태 및 장애	각각의 분류가 전신성질환 및 장애,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신생물,증상,증후 및 불명확한 병태 등 둘 이상의 대분류 상병이 발생한 경우를 분류
9	기타 질환, 병태 및 장애	분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분류항목이 없는 신체적 특징을 분류 ※ 우울증, 공포장애, 스트레스장애
z	분류불능	분류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8.21 상병부위

8.21.1 기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된 신체의 상병부위를 말한다.

8.21.2 분류체계

<표 35> 상병부위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머리	두개골 및 그 내.외부의 신체 가장 윗부분을 분류 ※ 뇌, 두피, 얼굴, 눈, 코, 귀, 입
1	목	위는 악골, 턱과 머리부위, 아래는 어깨로 둘러싸인 체간으로 두 부위가 연결되는 부위를 분류 ※ 경추, 성대, 인.후두
2	체간(몸통)	머리와 목, 팔, 다리로 둘러싸인 사지가 붙어있는 신체의 주된 부위를 분류 ※ 어깨,흉부,폐,심장,위,간,골반,둔부,서혜,요추,흉추
3	상지	위는 어깨와 가장 끝은 손가락으로 둘러싸인 사지를 분류 ※ 팔, 팔죽지(상완골), 팔꿈치(주관절), 아래팔(요골,척골), 손목,손,손가락
4	하지	위는 둔부와 가장 끝은 발가락으로 둘러싸인 사지를 분류 ※ 대퇴, 무릎, 발목, 발, 발가락
5	전신	신체의 특정부위에 손상이 없이 상해부위가 전신인 경우를 분류
6	다발성 신체부위	둘 이상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다발성 신체부위를 분류
9	기타 신체부위	상기 코드에서 분류되지 않은 신체부위를 분류 ※ 인공기관 등
z	분류불능	분류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를 분류

8.22 근로손실일

8.22.1 기준

(1) “제3항 용어 정의”의 근로손실로 근로손실일수는 『사망 및 영구 전 노동불능 (장해등급 제1급~제3급)』,『영구 일부 노동불능(장해등급 제4급~제14급)』, 『일시적 노동불능(장해판정을 받지 않은 자로서 휴업 및 비휴업 손실이 발생된 자)』으로 인한 손실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사망 및 영구 전 노동불능』과 『영구 일부 노동불능』에 해당하는 재해자는 고용노동부예규 제194호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요양근로손실일수 산정요령을 적용하고, 사망 및 장해판정 이전의 입원, 치료 등 요양 및 작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일은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3) 『일시적 노동불능』에 해당하는 재해자의 근로손실일은 휴업과 비휴업으로 구분하여 입원, 치료 등 요양 및 작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일에 300/365을 곱한 값으로 산출한다.

8.22.2 분류체계

<표 36> 근로손실일 분류코드

코드	코드명	해설
0	8일 미만	1주
1	8일 ~ 14일	2주
2	15일 ~ 28일	4주
3	29일 ~ 90일	
4	91일 ~ 180일	
5	181일 ~ 1년	
6	1년 초과 ~ 5년	
7	5년 초과	
8	사망자	
z	분류불능	

<부록 1>

발생형태 분류코드

분류코드	코드명	기타
01	떨어짐(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02	넘어짐(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03	깔림·뒤집힘(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04	부딪힘(물체에 부딪힘)	
05	물체에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06	무너짐(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07	끼임(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08	절단·베임·찔림	
09	감전	
10	폭발·파열	
11	화재	
12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업무상 사고
13	이상온도 접촉	
14	화학물질누출·접촉	
15	산소결핍	
16	빠짐·익사	
31	사업장내 교통사고	
32	사업장외 교통사고	
41	체육행사 등의 사고	
42	폭력행위	
43	동물상해	
49	기타	
Z	분류불능	
21	직업병(진폐 제외)	
22	직업병(진폐)	업무상 질병
23	작업관련질병(뇌심 등)	

<부록 2>

기인물 분류코드

0 설비·기계

00 상세정보 부족한 설비·기계
000 상세정보 부족한 설비·기계

01 일반제조 및 가공설비·기계
010 상세정보 부족한 일반제조 및 가공설비·기계
011 프레스 및 전단기
012 공작 및 절단기계
013 금속가공기계
014 목재가공기계
015 화합물 제조 및 취급설비
016 화합물, 요업토석가공기계
017 가열, 에너지 등 부대·지원설비
018 조립, 포장, 용접 등 설비·기계
019 기타 일반제조 및 가공설비·기계

02 특수공정 설비·기계
020 상세정보 부족한 특수공정 설비·기계
021 식료품 제조 설비·기계
022 종이제조 설비·기계
023 인쇄, 제본기계기구
024 섬유, 의복, 가죽 생산기계
029 기타 특수공정설비·기계

03 운반, 인양 설비·기계
030 상세정보 부족한 운반, 인양설비·기계
031 인양설비·기계
032 승강기
033 콘베이어
034 지게차
039 기타 운반, 인양설비·기계

04 **농림어업용 설비・기계**
040 상세정보 부족한 농림어업용 설비・기계
041 농업, 원예용 설비, 기계
042 벌목용, 원목가공 설비・기계
049 기타 농림어업용 설비・기계

05 **건설・광산용 기계**
050 상세정보 부족한 건설・광산용 기계
051 굴착 및 적재 관련 기계
052 정지 및 포설 관련 기계
053 지반다짐 및 포장 관련 기계
054 터널공사 및 광산 관련 기계
055 그 밖의 건설작업 기계
059 기타 건설・광산용 기계

09 **기타 설비・기계**
091 사무용기계기구
092 내외과 등 의료용 기계기구
093 제품의 시험, 측정, 진단장비기계
094 비산업용 가열, 세탁, 청소기계기구
095 미디어 및 통신기계기구
099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설비・기계

1 **휴대용 및 인력용 기계기구**

10 **상세정보 부족한 휴대용 및 인력용 기계기구**
100 상세정보 부족한 휴대용 및 인력용 기계기구

11 **휴대용 공구(동력)**
111 휴대용 공구(동력)

12 **휴대용 공구(동력여부 불투명)**
121 휴대용 공구(동력여부 불투명)

13 **수공구**
131 수공구

14 **인력용 기계기구**
141 인력용 기계기구

19 **기타 휴대용 및 인력용 기계기구**
199 기타 휴대용 및 인력용 기계기구

2 **부품, 부속물 및 재료**

20 **상세정보 부족한 부품, 부속물 및 재료**
200 상세정보 부족한 부품, 부속물 및 재료

21 **전기설비, 부품**
211 전기설비, 부품

22 **설비·기계기구 부품 및 부속물**
220 상세정보 부족한 설비·기계기구 부품 및 부속물
221 설비·기계 부품 및 부속물
222 동력전달장치
223 인양설비 부품 및 부속물
224 교통수단 부품 및 부속물
225 고정, 연결 부품 및 부속물
229 기타 기계기구 부품 및 부속물

23 **비금속광물 제품**
231 비금속광물 제품

24 **재 료**
240 상세정보 부족한 재료
241 금속재료
242 비금속광물 재료
243 방사성 금속광물

244 목재
245 고무, 플라스틱 압출·성형재료
249 기타 재료

25 조각, 파편, 쓰레기

251 조각, 파편, 쓰레기

29 기타 부품, 부속물 및 재료

299 기타 부품, 부속물 및 재료

3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30 상세정보 부족한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300 상세정보 부족한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31 비계 및 작업발판

310 상세정보 부족한 비계 및 작업발판

311 비계

312 작업발판

319 기타 비계 및 작업발판

32 거푸집 및 동바리

320 상세정보 부족한 거푸집 및 동바리

321 거푸집

322 동바리

329 기타 거푸집 및 동바리

33 단부 및 개구부

330 상세정보 부족한 단부 및 개구부

331 단부

332 개구부

339 기타 단부 및 개구부

34 계단 및 사다리

340 상세정보 부족한 계단 및 사다리

341 계단

342 사다리

349 기타 계단 및 사다리

35 바닥 및 지표면 등

350 상세정보 부족한 바닥 및 지표면 등
351 바닥, 통로 등
352 사면 및 암반
359 기타 바닥 및 지표면 등

36 기타 가설구조물
360 상세정보 부족한 기타 가설구조물
361 흙막이 지보공
362 가설통로 및 난간 등
369 기타 가설구조물

37 기타 건물·구조물 등
370 상세정보 부족한 기타 건물·구조물
371 철골빔, 트러스
372 지붕, 대들보
373 탑, 전주
374 맨홀, 터널 등
379 기타 건물·구조물 등

38 건축물·구조물의 구성요소, 부속물
381 건축물·구조물의 구성요소, 부속물

39 기타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399 기타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4 용기, 용품, 가구 및 기구

40 상세정보 부족한 용기, 용품, 가구 및 기구
400 상세정보 부족한 용기, 용품, 가구 및 기구

41 용기, 꾸러미 및 기구
410 상세정보 부족한 용기, 꾸러미 및 기구
411 운반·포장용 용기 및 기구
412 조리·실험 등 취급용 용기 및 기구
419 기타 용기, 꾸러미 및 기구

42 생활용품 및 기구
421 생활용품 및 기구

43 가구 및 사무기구
431 가구 및 사무기구

44 의복·보호장비 및 장신구류
441 의복 ·보호장비 및 장신구류

49 기타 용기, 용품, 가구 및 기구
499 기타 용기, 용품, 가구 및 기구

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0 상세정보 부족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00 상세정보 부족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1 산류
510 상세정보 부족한 산류
511 산가스 (할로겐)
512 무기산 (할로겐)
513 무기산 (기타)
514 유기산
515 복합산
519 기타 산류

52 알카리류
520 상세정보 부족한 알카리류
521 수산화칼슘, 산화칼슘
522 탄산염 (칼슘,나트륨)
523 수산화리튬
524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탄산칼륨
525 복합 알카리 용제
529 기타 알카리류

53 방향족 및 지방족 탄화수소

530 상세정보 부족한 방향족 및 지방족 탄화수소
531 알코올
532 알데히드
533 아민류 (지방족)
534 방향족 탄화수소
535 에테르
536 케톤
537 과산화물
538 복합 방향족 및 지방족 탄화수소
539 기타 방향족 및 지방족 탄화수소

54 할로겐 및 할로겐화합물
540 상세정보 부족한 할로겐 및 할로겐화합물
541 불소 및 불소화합물
542 염소 및 염소화합물
543 브롬 및 브롬화합물
544 요오드 및 요오드화합물
545 복합 할로겐 및 할로겐화합물
549 기타 할로겐 및 할로겐화합물

55 그 밖의 화학물질
550 상세정보 부족한 그 밖의 화학물질
551 극저온 가스
552 암모니아 및 암모니아화합물
553 분류되지 않은 시안 및 시안화합물
554 분류되지 않은 산소 및 산소화합물
555 황 및 황화합물
556 복합 그 밖의 화학물질
559 기타 그 밖의 화학물질

56 금속미립자, 미량원소, 분진, 흄
560 상세정보 부족한 금속미립자, 미량원소, 분진, 흄
561 비소, 비소화합물
562 베릴륨, 베릴륨화합물
563 카드뮴, 카드뮴화합물
564 납, 납화합물

565 수은, 수은화합물
566 기타 금속화합물
567 분류되지 않은 용접·용융시 발생하는 흄
568 복합 금속 및 금속화합물
569 기타 금속미립자, 미량원소, 분진, 흄

57 화학제품
570 상세정보 부족한 화학제품
571 농업용 화합물 및 기타 살충제
572 일반 화학제품
573 석탄, 천연가스, 석유연료 등 석유화학제품
579 기타 화학제품

5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9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 교통수단

60 상세정보 부족한 교통수단
600 상세정보 부족한 교통수단

61 육상교통수단
610 상세정보 부족한 육상교통수단
611 육상일반차량
612 육상운반·특장차량
613 철도차량
619 기타 육상교통수단

62 항공, 수상교통수단
620 상세정보 부족한 항공, 수상교통수단
621 항공교통수단
622 수상교통수단
629 기타 항공, 수상교통수단

69 기타 교통수단
699 기타 교통수단

7 사람, 동・식물

71 사람, 동・식물

710 상세정보 부족한 사람, 동・식물
711 사람
712 동물
713 식물 및 비가공상태 식물
714 식품
715 비식품류 동물제품
716 전염 및 기생성 생물체
719 기타 사람, 동・식물

8 작업환경, 대기여건 등 자연현상

81 작업환경, 대기여건 등 자연현상

810 상세정보 부족한 작업환경, 대기여건 등 자연현상
811 이상기압, 온도
812 소음
813 유해광선
814 날씨 및 대기여건
815 그밖의 환경여건
816 물, 수증기
819 기타 작업환경, 대기여건 등 자연현상

9 기타 기인물

99 기타 기인물

999 기타 기인물

Z 분류불능

기술지원규정 개정 이력

□ 개정일 : 2025. 2. 3.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 개정사유 :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과 “인력으로 들기 어려운 중량물로서 기계·기구 등을 활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을 구분하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산업재해현황 통계 분류기준과 용어 및 분류기준 등을 통일

○ 주요 개정내용

- **(4. 업무상사고 재해자와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분류기준)** 요부질환에 대한 정의를 산업재해현황 통계와 일치 및 중량물 취급과 관련한 용어를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과 일치
- **(6. 사업장의 특성 분석항목의 분류체계 및 기준)**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을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과 일치(현행화)
- **(8. 재해발생 특성 분석항목의 분류체계 및 기준)** 발생형태에 대한 구분 및 정의를 산업재해현황 통계 기준과 일치
- **(부록1)** 발생형태에 대한 대분류명 및 분류코드를 산업재해현황 통계 기준과 일치

□ 재공표 : 2025. 3. 26.

○ 기술지원규정 영문 명칭(KSH-GUIDANCE→KOSHA GUIDE)으로 재공표

KOSHA GUIDE
기술지원규정

·규정번호 : A-G-8-2025
·심　　의 :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공 표 일 : 2025. 3. 26.